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. 11. 30 선고 2019가단4419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 담당변호사 윤유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10. 26.

판 결 선 고 2021. 11. 30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2018. 10. 17. 체결된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 2018. 10. 17. 접수 D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
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이고, 피고는 C의 모친이다.

나. C는 2014. 10. 8. E 주식회사(이하 'E'이라 한다)와 사이에,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(당시 (차량번호 1 생략), 이하 '이 사건 자동차'라 한다)를 리스물건으로 하고, 취득원가를 116,705,730원, 리스 기간을 48개월, 보증금을 32,760,000원, 리스료를 월 2,394,100원으로 하되, 리스 기간 종료 시 잔여 리스원금(잔존가치)을 32,760,000원으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받는 내용의 리스계약(이하 '이 사건 리스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다.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E은 2014. 10. 20.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신규등록을 마쳤고, 이후 C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였다.

라. 원고는 2017. 4. 22. C와,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(이하 '이 사건 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 이후 원고는 C에게 매매대금 일부 명목 등의 돈을 지급하였고, C는 2017. 6. 10.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,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.

마. C는 2018. 4. 25. 원고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,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을 요청하였다.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자, C는 2018. 10. 14. 이 사건 자동차를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.

바. E은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 2018. 10. 17. 접수 F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.

사. C는 2018. 10. 17. 피고와,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는 내용의 자동차 매매계약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 2018. 10. 17. 접수 D로 소유권이전등록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'이라 한다)을 마쳐주었다.

아. 원고는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236370호로 이 사건 계약 해제로 인한 대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21. 9. 28. C는 원고에게 28,075,283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. 위 판결에 대하여 C, 원고가 모두 항소하여,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, 9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대금 반환 등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성립하여 있었으므로,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C의 채무초과상태

1) 갑 제7, 8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주식회사 G(이하 'G은행'이라 한다), 주식회사 H(이하 'H은행'이라 한다), 우정사업본부,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G은행 예금채권 6,940원, H은행 예금채권 12,640원, 우체국 예금채권 736원, 시가 182,000,000원 상당의 광주시 I 외 3필지 지상 J빌라 K호(이하 '이 사건 빌라'라 한다), 시가 77,000,000원 상당의 이 사건 자동차, 합계 259,020,316원의 적극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.

2) 나아가 C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 대하여 73,058,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, 갑 제7호증, 을 제3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H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C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17,100,000원의 채무,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2,302,587원의 채무, L 주식회사에 대한 10,664,689원의 채무, H은행에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130,900,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, C는 2018. 4. 30. 수원지방법원 2018개회1020075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2019. 1. 23.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, 채권자 목록에 '25. M 5,000,000원', '26. N 4,000,000원', '27. O 60,000,000원'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.

3)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.

다. 사해행위 성립

위 인정 사실에다가 피고와 C가 모자 관계인 점,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현실로 지급하지 아니한 점,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

보이는 점 등을 덧붙여 보면,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통모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. 나아가 이 사건 리스계약 종료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E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, 이 사건 매매계약,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이 같은 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,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E에 납부한 리스료 등에는 원고, C의 돈도 포함되어 있어, 그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실질적인 증감이 있었다고 평가되는 점, C가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리스계약상 권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,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라.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

피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본 것이 없다고 하여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, 앞서 다.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마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

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기진석

[별지]

자동차의 표시

등록번호	
차 명	카이엔 디젤 플레티늄에디션
형식및모델연도	92A 2014
차대번호	
원동기형식	CRC
사용본거지	대구광역시 중구
등록연월일	2014. 10. 20. 끝.

